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 해 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사법 개정·공포('20. 6. 9.)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해산신고 등 관련 서식, 업무정지처분 기준 신설 등 후속법령을 정비하고,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등 기타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 업무신고 등 서식(안 시행규칙 제17조의3, 4, 5 신설)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행정사법인 설립 관련 세부절차 및 서식 마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나, 마, 바 항 신설)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소에 상근하지 않거나, 감독관청의 명령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준 규정

다. 시험면제시 직급환산 기준 지정자 정정(안 시행규칙 제2조제1호 개정)
시험면제 경력의 직급 환산시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 반영

라.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안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3항 신설)
행정사 폐업신고시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만 신고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폐업신고'의 근거 마련

마. 기타

- 1) 행정사 업무신고 및 실무교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사항 반영(안 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개정)
- 2) 휴업 후 업무를 다시시작하는 경우를 ‘업무재개’로 한 명칭 적용(안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개정)
- 3)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하는 번역확인증명서에 “외국어 종류” 명시
(안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 4)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변경
신고시 처리기간 현행화(안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 5) 합동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서식 개선(안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 6) 일몰규제 규정 삭제(안 시행규칙 제19조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3) 행정규제

행정안전부령 제 호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업무신고”를 “행정사의 업무신고”로 하고, 제2항 중 “특별
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제4호, 제4항제1호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속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회원증 사본 각 1부

라. 변경된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제11조제1항을 제11조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재개업을 신고한”을 “업무재개신고를 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
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
5항에 따라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
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중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르며,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행정사법인의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②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르고,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신고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5. 행정사법인 정관 1부

6.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②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다.

③ 시장 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행정사법인 관리 대장

④ 행정사법인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다. 변경된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라. 변경된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 행정사법인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1부

제15조의4(행정사법인의 해산신고) 영 제23조의6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의5(준용규정)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9조제3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과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합동사무소’는 ‘행사법인’으로, 제12조제5항 후단의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은 “별지 제19호의6서식”으로, 제12조제5항제1호의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제12조제5항제2호의 “별지 제14호서식”은 “별지 제19호의8서식”으로 본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 정관 1부
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업무정지처분 기준 중 개별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제18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조의2 서식, 제19조의3 서식, 제19조의4 서식, 제19조의5 서식, 제19조의6 서식, 제19조의7 서식, 제19조의8 서식, 제19조의9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업무정지처분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준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인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1호	2개월	4개월	6개월

나.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2호	2개월	4개월	6개월
다. 법 제17조제1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3호	경고	1개월	2개월
라. 법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4호	1개월	2개월	3개월
마. 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5호	2개월	4개월	6개월
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6호	1개월	2개월	3개월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발급일	

재발급 사유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O— —OH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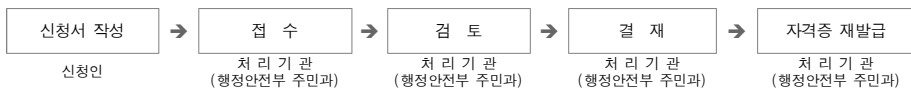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행정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행정사 업무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교육기관	교육기간
------	------	------

사무소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개업일		
		년	월 일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합니다.

이
무
도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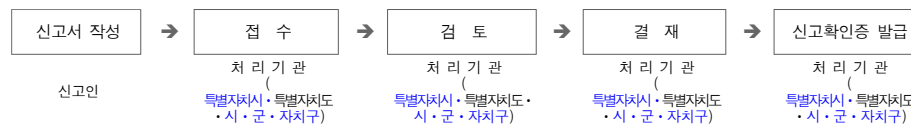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사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업무변경 [] 휴업
행정사 [] 사무소이전 [] 재개 신고서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또는 10일
신고인 (대표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사무소 (합동 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폐업·휴업 및 재개 신고사항	폐업일, 휴업일 또는 재개일		
	폐업 및 휴업 사유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폐업 신고만 해당함)		
	휴업기간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처리기간은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외의 신고는 즉시입니다.	수수료 없 음
------	--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같은 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의 신 청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사무소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신청 요지			

「행정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에 대한 년 월 일 수리 거부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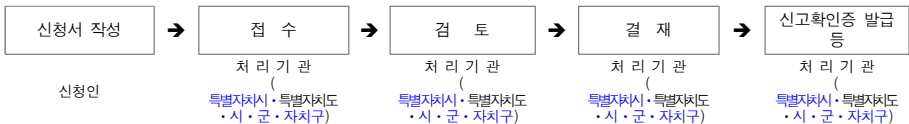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신고번호 제 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행정사 성명	생년월일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에 찍은 것)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행정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제 호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합동 사무소	명 칭	주 소		
대표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소속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분사무소	명 칭	주 소		책임 행정사
	명 칭	주 소		책임 행정사
	명 칭	주 소		책임 행정사
「행정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일련 번호	신 고 연월일	행정사 인적사항						사무소			비고 (신규/변경/휴업/ 폐업/업무재개 등)
		자격증 번호	행정사 종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외국어:)								

297mm×210mm(보존용지(1종) 120g/㎡)

행정사 관리 대장

(앞쪽)

신고번호(허가번호, 등록번호)		신고(허가, 등록) 연월일		사 진 3cm × 4cm (오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에 찍은 것)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자격증 번호	자격증 발급처 및 발급일		
(외국어:)				
사무소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휴업 / 폐업 / 업무재개	구 분	날 짜	사 유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사항	발급일	재발급 사유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신 고 / 허 가 / 등 록 사 항 변 경	날 짜	변경 전	변경 후

행 정 사 교 육	교육기관	과 정	기 간

징 계 / 별 칙 / 과 태 료	날 짜	구 분	사 유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법인업무신고확인증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행정사 (대표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사무소 (합동 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행정사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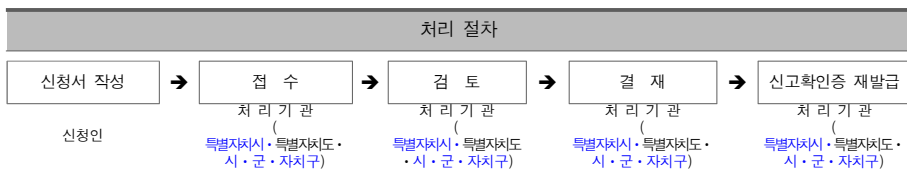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대표 행정사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기관/기간)
합동 사무소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기관 및 기간)
분사무소	명 칭		책임 행정사	주 소	
	명 칭		책임 행정사	주 소	
	명 칭		책임 행정사	주 소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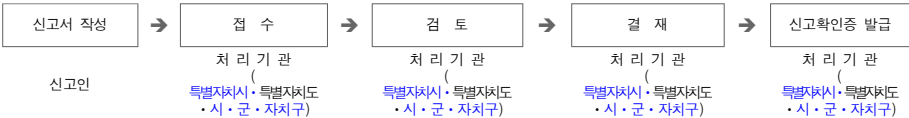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소속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5.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번역확인증명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 도		
불임 은(는) 신청인 의 년 월 일 위임에 의하여 부터 까지 본인이 번역하였으며,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불임 :		
외국어번역행정사(외국어 종류:) ○ ○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행정사 법인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법인 구성원	성명	자격증 번호	성명	자격증 번호	
분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근 법인구성원 성명	

「행정사법」 제2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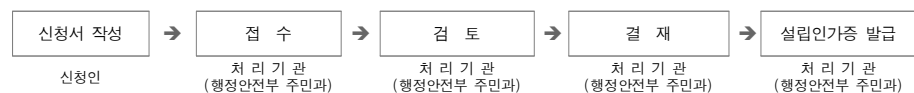
이	의	도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부서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4.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행정사법인 인가대장

(앞쪽)

인가 번호	인가 연월일
설립등기 연월일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행정사 법인	명칭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illegible]

분사무소	소재지	상근 법인구성원	전화번호

정관 변경	날짜	변경 전	변경 후

(뒤쪽)

그 밖의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인가번호 제 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 1. 법인의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행정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합
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210mm× 297mm[백상지(1종) 120g/㎡]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행정사	행정사 종류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기관/기간)		
	(외국어)						
행정사	명 칭						
법인	주 소			전화번호			
법인 구성원	성 명	생년월일	행정사 종류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기관 및 기간)		
			(외국어:)				
소속 행정사							
분사무소	명 칭		주 소		상근 법인구성원		

「행정사법」 제2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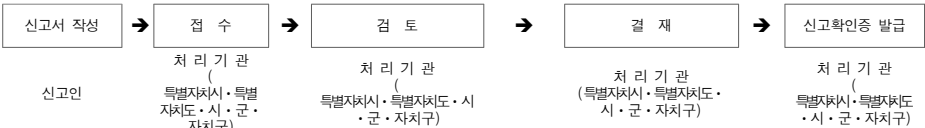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 음
	2.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5. 행정사법인 정관 1부	
	6.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제 호

법인업무신고확인증

행정사	명 칭		주 소	
법인				
대표	성 명	생년월일	행정사 종류	자격증 번호
행정사	(외국어:)			
법인 구성원	성 명	생년월일	행정사 종류	자격증 번호
			(외국어:)	
분사무소	명 칭	주 소		상근 법인구성원
	명 칭	주 소		상근 법인구성원
	명 칭	주 소		상근 법인구성원

「행정사법」 제25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

일련 번호	신 고 연월일	법인명	행정사						사무소				비고 (신규/변경/휴업/ 폐업/업무재개 등)
			구분	자격증 번호	행정사 종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구분	명칭 (상근법인구성원)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행정사		(외국어:)				주사무소	()			
			법인구성원						분사무소				
			소속행정사										
			대표행정사						주사무소				
			법인구성원						분사무소				
			소속행정사										

210mm×297mm(백상지 150g/㎡)

행정사법인 관리 대장

(앞쪽)

신고번호(허가번호, 등록번호)		신고(허가, 등록) 연월일	
설립등기 연월일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행정사 법인	명칭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법인 구성원	성명	자격증 번호	소속 행정사	성명	자격증 번호

분사무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상근 법인구성원

휴업 / 폐업 / 업무재개	구 분	날 짜	사 유

(뒤쪽)

신	날 짜	변경 전	변경 후
고			
/			
허			
가			
/			
등			
록			
사			
항			
변			
경			

행	교육기관	과 정	기 간
정			
사			
교			
육			

징	날 짜	구 분	사 유
계			
/			
별			
칙			
/			
과			
태			
료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9서식] <신 설>

행정사법인 해산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 등록번호		
행정사법인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가번호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행정사법」 제25조의8제1항제()호		

「행정사법」 제25조의8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서 1부	수수료		
	2.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검토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결재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대장기록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주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자격증 번호

임원	성명	행정사 종류	자격증 번호	성명	행정사 종류	자격증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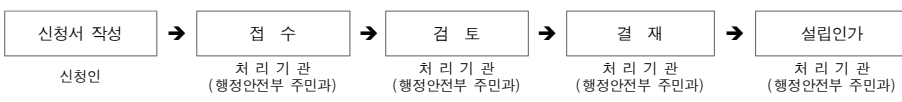
지회, 지부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 정관 1부 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행정사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현행과 같음)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u>행정안전부장관</u> 이 정한 기준	1. ----- ----- <u>인사혁신처장</u>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업무신고) ① (생략)	제7조(<u>행정사의</u> 업무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특별자치도지사</u>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 ----- -----.

③ (생 략)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②·③ (생 략) ④ (생 략) 1. (생 략) 가. ~ 다.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4. 소속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u> <u>5. (현행 제4호와 같음)</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변경된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u>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u>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u> <u>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u>
제11조(사무소의 이전) ① (생 략) <u>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시장등이 보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u> 2. <u>해당 행정사의 업무 신고서 및 첨부서류</u>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① (생 략) <신 설>	제11조(사무소의 이전) <u>(현행 제1항과 같음)</u> <u><삭 제></u>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u>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u>재개업을 신고한</u>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⑤ -----</u> <u>-----</u> <u>-----</u> <u>-----</u> <u>업무재개신</u> <u>고를 한 -----</u> <u>-----</u> <u>-----</u>

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2. (생 략) 제15조(실무교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 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제15조(실무교육) ----- ---<u>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u>----- ----- ----- ----- -----. 제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르며,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행정사법인의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②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행	<신 설>	정사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르고,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신고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5. 행정사법인 정관 1부 6.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②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다. ③ 시장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	--------------------	--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행정사
법인 관리 대장

④ 행정사법인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
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
격증 사본 각 1부

나.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다. 변경된 행정사의 사진 각 1
장

라. 변경된 행정사의 대한행정
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 행정사법인 정관이 변경된 경
우: 변경된 정관 1부

<신 설>

<신 설>

제16조(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
청) 영 제24조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5조의4(행정사법인의 해산신고)
영 제23조의6에 따른 행정사법인
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9호의9서
식에 따른다.

제15조의5(준용규정)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제9조제3항, 제11
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과 제12조제1
항 및 제4항의 ‘합동사무소’는 ‘행
사법인’으로, 제12조제5항후단의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
2호서식”은 “별지 제19호의6서
식”으로, 제12조제5항제1호의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19
호의7서식”으로, 제12조제5항제2
호의 “별지 제14호서식”은 “별지
제19호의8서식”으로 본다.

제16조(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신
청) 영 제24조에 따른 대한행정
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
20호 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제1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2015년 1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u>2. 정관 1부</u> <u>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u> <u>4.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u> <u>5. 창립총회 회의록 1부</u> <u><삭 제></u>
---	---